

제목 없음

1. 조세범칙행위의 내용

조세범칙행위(관세범칙행위)란 조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 수출입금지에 대한 위반행위, 과세표시(Wertzeichen) 위조 및 그 예비, 그리고 위의 행위에 대한 비호를 말한다(조세기본법 제369조제1항). 그리고 이러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법의 형사규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형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을 적용한다(조세기본법 제369조제2항).

2. 탈세

탈세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조세기본법 제370조제1항)에 처하며 해당 행위의 시도도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조세기본법 제370조제2항).

- 과세당국 또는 그 이외의 관청에 과세상 증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진술을 하는 것
- 협조의무에 위반하여 과세상 증대한 사실을 과세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
- 협조의무에 위반하여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또한 이들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면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이 부당한 조세상의 이익을 얻는 것.

특히 악질적인 탈세행위에 대하여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조세기본법 제370조제3항). 이때 특히 악질적인 경우란 원칙적으로 다음 경우를 말한다.

-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규모로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한 조세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
- 공무원으로서의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공무원의 원조를 이용하는 경우
-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한 조세상 이익을 얻은 경우

조세가 기한 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적법하게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조세는 탈루된 것으로 본다. 이는 조세가 사전에 또는 사후심사의 유보하에 확정되거나 또는 사후심사의 유보하에 납세신고를 조세 확정과 동일하게 본 경우에도 적용된다. 부당하게 부여되거나 부당하게 조세상의 이익을 받는 환급도 조세상의 이익으로 본다. 범죄와 관련된 조세가 다른 근거에서 사면을 받거나 또는 다른 근거에서 조세상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동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조세기본법 제370조제4항).

탈세와 관련된 범행은 수입, 수출, 통과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물건에 관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조세기본법 제370조제5항).

조세기본법 제374조에서는 관련 소비세나 관세를 탈세하였거나 수출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생산물 또는 물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매각 또는 매각을 보조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유럽공동체의 타 회원국에 의해 처리되거나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타 회원국 또는 동 연합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국가에 귀속하는 수출입 관련 조세의 포탈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전문적 세금포탈

특별히 전문적으로 수출입 관련 조세를 포탈하거나 전대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조세기본법 제373조제1항). 동조 제2항에서는 다음에 규정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 본인 또는 관계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수출입 관련 조세를 포탈 또는 수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 타인의 저항을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으로 방해하거나 제압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관계인이 무기나 기타 도구 또는 기구를 휴대하고 수출입 관련 조세를 포탈 또는 수출금지조항을 위반한 자
- 수출입 관련 조세의 포탈 또는 수출금지조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일원의 협력을 얻어 당해 범죄를 범한 자

4. 탈세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탈세행위를 세무관청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용을 정정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조세기본법 제371조제1항). 단, 다음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조세기본법 제371조제2항).

- 정정, 보완 또는 사후신고 전에 다음의 사실이 있었던 경우
 - a) 세부조사, 조세범법행위 또는 조세질서위반의 조사시 세무관청의 공무원이 현장에 임했던 경우
 - b) 탈세범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범행에 관한 형사소송절차 또는 벌금절차 개시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
- 정정, 보완 또는 사후진술 시에 당해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발각되고 동시에 탈세범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사려 있는 사안 판단에 의하여 발각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음이 명확한 경우

5. 조세질서위반

조세질서위반(관세질서위반)이란 조세법에 의하여 과태료(Geldbusse)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말한다(조세기본법 제377조제1항). 조세질서위반에 대해서는 조세법의 과태료규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의 제1편의 규정을 적용한다(조세기본법 제377조제2항).

납세의무자로서 또는 납세의무자의 사무를 행함에 있어 제370조제1항에 규정한 행위 중 하나를 과실에 의해 범한 자는 질서 위반을 범한 것으로 한다(조세기본법 제378조제1항). 이러한 질서위반에 대해서는 50,000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조세기본법 제378조제2항). 당해 행위를 범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당해 행위에 관한 형벌 절차 또는 과태료 절차의 개시 통지가 있기까지 당해 행위를 범한 자가 세무관청에 대하여 기존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했던 진술을 정정·보완하는 경우 또는 없었던 진술을 추가로 행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

제목 없음

하지 않는다(조세기본법 제378조제3항).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행위를 통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한 조세상의 이익을 획득한 자는 질서위반을 범한 것이다(조세기본법 제379조제1항).

- 사실이 아닌 증빙자료를 발행하는 행위
- 법률상 기장 또는 기록의무가 있는 거래 사실 또는 사업 운영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장하거나 이를 시킨 행위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질서위반을 범한 것이다(조세기본법 제379조제2항).

- 회사 등의 설립신고의무(조세기본법 제138조제2항)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거나 또는 법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
- 계좌의 실명의무(조세기본법 제154조제1항)를 위반한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거나 또는 법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는 조세질서위반을 범한 것이다(조세기본법 제380조제1항). 이 규정의 질서위반에는 25,000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조세기본법 제380조제2항).

또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소비세법 또는 이와 관련된 법규명령의 규정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자는 조세질서위반을 범한 것으로 한다(조세기본법 제381조제1항). 이는 다만 소비세법 또는 이와 관련된 법규명령이 일정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본 조항의 과태료규정이 적용됨을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 과세의 준비, 확보 또는 사후검사를 위하여 부과된 의무
- 소비세 과세대상인 생산물 또는 당해 생산물을 포함한 물품의 포장 및 표시, 당해 생산물 또는 물품에 대한 운송제한 또는 사용제한
- 비과세된 물품의 보세구역 내 소비

동 규정의 조세질서위반에 대해서는 5,000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조세기본법 제381조제2항).

수출입 관련 조세납부의무자로서 또는 수출입 관련 조세납부의무자의 사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에 적용되는 관세법, 이와 관련된 법규명령, 유럽공동체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명령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자는 조세질서위반을 범한 것이다(조세기본법 제382조제1항).

- 유럽공동체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운송에 대한 관세당국의 확인
- 세관절차로의 상품의 인도 및 실행, 그리고 기타 관세법이 규정
- 관세자유지역, 관세국경지구 또는 국경감시대상지역

동 규정은 관세법 및 이에 관련된 법규명령이 소비세에 준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조세기본법 제382조제2항).

이러한 조세질서위반에 대해서는 5,000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조세기본법 제382조제3항).

조세질서위반에 대한 소추권의 시효는 5년이다(조세기본법 제384조).